

3.9(수) 석간 (인터넷 3.9(수) 06:00이후)



## 보도자료

▶ 장애인고용과 과장 장미혜  
사무관 이영진

- ▶ 2011. 3. 9. 배 포
- ▶ 총 7쪽(사진 없음)

TEL : 02-2110-7307, 010-9178-1602  
FAX : 02-502-5442  
E-MAIL : molab07@moel.go.kr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알림마당 → 고용노동부 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3월 9일(수) 공포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6%) 의무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도입, 고용장려금 부정행위 제재 규정 합리화이다.

#### ①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인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2.3%(공공기관은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11년 1인당 56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고용부담금 = (의무고용미달인원 × 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

-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1인당 월 56만원 → 90만원)

※ '10.6월 현재 고용률 0% 기업: 1,476개소(100인 이상 기업의 13.6%)

- 그 시행 시기는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2011.7.1.부터 제일 먼저 시행되며
-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2012년 1월 1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고용부담금 변화(월 단위) >

구분	고용부담금	시행시기
의무고용률 1/2 이상	미고용인원 × 56만원	현행
의무고용률 1/2 미만	(1/2 이상 인원 × 56만원) + (1/2미만 인원 84만원)	
장애인 미고용(0%)	미고용인원 × 최저임금* * 902,880원 (시급 4,320원 × 주 40시간)	300인 이상: 2011.7.1. 200인 ~ 299인: 2012.1.1. 100인 ~ 199인: 2013.1.1.

②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말하며,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이 중 중증장애인을 50% 이상 채용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10.12.31. 현재 14개소 설립·운영(장애인 427명/중증 249명)

- 종전에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한 기업에게만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산정 시 혜택을 주었으나

- 개정 법률은 2명 이상의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는 형태인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도 출자 비율에 따라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투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 아울러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1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 ③ 교사 구분모집 예외 폐지

-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이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의 3% (장애인 고용률이 3% 미만이면 6%)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종전에는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분모집 예외 규정을 두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비장애인 교사로 채용하였으나
- 이번 법 개정으로 예외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교사의 경우에도 일반 공무원처럼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은 결원으로 운영하거나 재공모를 통해 반드시 장애인 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 개정 법률은 교사 양성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시행한다.

※ '09년 12월 기준 장애인 교사 고용률 0.73%(교원 325,779 중 장애인 교원 2,365명)

### ④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도입

-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10년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225명에게 지원 되었으나 법적 근거 없이 개별 지원사업으로 진행(상세내용 불임3)

### 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규정 합리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으려한 자에 대하여
-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이외에 추가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부정횟수에 비례하도록 5배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되도록 하였고
- 지급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과도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규정 변화 >

총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제한: 2년(임의규정)</li> <li>* 기산시점: 부정수급 발생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제한: 1년(의무규정), 고용장려금 지급 후 3년 경과 시 지급제한 제외</li> <li>* 기산시점: 지급제한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징수금: 2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징수금(시행규칙 제13조)</li> <li>1.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던 사실이 없는 경우: 2배</li> <li>2.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3배</li> <li>3.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5배</li> </ul>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없도록 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장애인 교사 진출 확대, 중증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고용노동부는 의무고용 이행지도 강화, 사업주 및 장애인 지원 제도 실시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첨부1>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 의무고용률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기타공공기관 포함) 2.3%

※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의 단계적 상향: ('10년) 2.3%, ('12년) 2.5%, ('14년) 2.7%

※ 외국의 의무고용률: 프랑스 6%, 독일 5%, 오스트리아 4%, 일본 1.8~2.1%

-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고용부담금 부과, 의무고용률 2.7%를 초과하면 고용장려금 지급

※ 고용장려금: 1인당 월 50만원~15만원(중증·여성 장애인 우대)

### < 장애인 고용 주요 통계 >

◆ 등록장애인구: '09년 12월 말 기준, 243만명(전체인구 대비 4.88%)

◆ 장애인 경제활동현황('10.5.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분	15세이상	경 활률(전국민)	실업률(전국민)	고용률(전국민)
전체	2,376,431	38.5 (61.9)	6.6 (3.2)	36.0 (60.0)
경증	1,578,901	47.8	5.4	45.2
중증	797,530	20.2	11.8	17.8

◆ 의무고용제도 이행현황

- '10.6월 기준 의무고용 기업체는 21,449개소이며, 여기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는 114,888명

- 장애인 고용률은 2.19%(중증2배수 미적용 시 1.88%)로 의무고용률\*에 미달

구분	기업체	적용대상 인원	고용의무 인원	장애인	고용률
총계	21,449	6,109,902	136,720	133,967	2.19
국가지체단체	81	824,518	24,775	19,262	2.34
공공기관	248	293,531	7,807	7,132	2.43
민간기업	21,128	4,976,720	89,831	107,573	2.15

## 외국의 표준사업장

---

### ○ Samhall(스웨덴), Remploy(영국)

- 정부 주도의 장애인 다수고용모델로서 경쟁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기업체로 전직을 유도하기 위해 설립
- 전체 근로자의 90% 이상이 장애인이며, 장애인 고용 및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가 주목적임
- 문제점 : 정부의 전액 출자로 인해 초기 설립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지속적인 보조가 요구됨
  - ※ 스웨덴의 Samhall은 최근 부도상태를 맞이한 바 있음

### ○ GoodWill Industry(미국)

- 미국 전역에 1,900여개 소매점이 있으며, 지역주민으로부터 기부 받은 물품을 재활용하여 저가 판매
- 철저히 민간중심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중간 지대적 역할 수행에는 미흡
- 문제점 : 기부의 일상화, 재활용품에 대한 사회인식 등 사회환경적 요인이 전제되어야 하며, 최근에는 수익성 향상이 우선 고려됨에 따라 장애인고용비율 하락

### ○ 특례자회사 제도(일본)

- ※ 일본은 '09년 4월 현재 약 258개의 장애인 특례자회사가 설립·운영 중임
- 자회사를 설립해 회사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모회사의 장애인 고용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사업장을 따로 만들고 그곳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이를 모회사의 장애인고용실적으로 인정
- 문제점 : 자칫 기존의 보호작업장처럼 될 수도 있으며, 장애인만의 자회사 정책이 자칫 변형된 형태의 차별이 될 수 있음

## 근로지원인 제도

### ○ 목 적

-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저해하는 신체적 제약요인을 보완함으로써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

### ○ 사업추진 경위

- ('07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 ('08년~'09년) 장애인고용공단 시범사업 실시
- ('10년) 정규사업으로 도입

### ○ '10년 실적 및 '11년 계획

- '10년 중증장애인 225명\*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15억원)  
※ 시각 109명, 지체 45명, 뇌병변 13명, 지적장애 21명 등
- '11년 18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대상 확대

#### < 근로지원인 서비스 예시 >

장애유형	근로지원 서비스 예시
지체 · 뇌병변	①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② 핵심 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의 운반 및 이동 지원 ③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의 휠체어 등 이동 지원 ④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받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등
시각	① 업무보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②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③ 인터넷 · 신문 · 전문서적 등 업무와 관련한 정보 검색 ④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등
청각 · 언어	①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② 직무상 연관된 고객관리 지원 ③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④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등